

2019년 사회주의 헌법 개정 이후 북한의 경제관리방식 변화: 경제 관련 개별법 개정 내용을 중심으로*

김미연(KDB산업은행 선임연구원)

논문요약

본 연구는 2019년 사회주의 헌법 개정 이후 경제 관련 주요 법령 정비 현황을 정리하고 개정 내용의 특징을 분석하여 북한의 경제관리방식 변화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첫째, 인민경제계획법은 계획 목표 달성 중시, 계획수행의 분권화, 계획수행 주체의 책임 강화 세 가지 특징을 나타냈다. 둘째, 재정법은 당국의 지원 축소, 생산단위의 권한과 책임 동시 확대, 재정 통제 강화 측면을 강조한다. 셋째, 농장법은 당국의 지원 확대, 농장 자체 경영권 부여, 자율성 확대에 의한 부작용 방지 및 통제를 주요 개정 내용으로 한다. 넷째, 기업소법은 기업 경영관리 개선방안 제시, 기술개발을 통한 생산 확대, 국가경제발전전략과 기업경영전략의 연계라는 특징을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무역법은 무역 범위 구체화, 무역 통제 강화 측면을 보여주었다. 법이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북한 당국의 경제관리방식 추진 이행에 담보력을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분야별 후속 조치들을 검토한 결과 경제관리방식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사항도 발견되었다. 계획수립 및 수행의 탄력성을 부여했던 종전에 비해 반드시 달성해야 할 사항을 당국이 지정하고 철저한 복종을 강요하는 기조로 변화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농업 분야에 지원을 집중하고자 했던 종전 관리방식에서 재정적 지원을 약화하고 양곡정책을 추진하는 등 중앙 관리식으로 되돌아갈 가능성도 엿보인다. 대외무역 분야에서는 무역 재개를 염두에 둔 준비 차원의 동향들이 파악되었으나 2022년 1월 무역법 개정과 북한의 공식 회의 내용을 미루어 볼 때 중앙의 통제력이 더욱 강화되는 양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전반적으로 북한 당국은 당분간 경제 정비, 보강에 집중하는 형태의 경제관리방식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제어: 사회주의 헌법, 인민경제계획법, 재정법, 농장법, 기업소법, 무역법, 경제관리방식

* 이 논문은 통일부의 신진연구자 정책연구과제 공모사업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I. 서론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경제 관련 개선조치는 법률화 이전에 시범적으로 시행해 보는 과정을 거쳤다.¹⁾ 그런데 갑자기 북한 당국은 2019년 사회주의 헌법에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를 명시하는 등 경제 관련 주요 변화 내용을 수록하였다. 이처럼 종전과 달리 상위법인 사회주의 헌법에 경제 관련 개선조치를 명시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문제의식이 본 연구의 출발점이다.

기존 관련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2019년 사회주의 헌법 개정의 배경과 의미에 초점을 맞췄다. 박진우, 법제처, 박정진의 연구가 대표적이거나 개별법에 대한 분석을 병행하고 있지 않아 구체적인 경제 변화 양상을 파악하기 어렵다.²⁾ 한편 경제 관련 법제 내용을 통해 북한의 경제정책 현황을 분석한 자료도 있다. 최은주는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법제 정비 현황을 검토하였다. 다만, 법의 양적 분석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긴다.³⁾ 반면에 양문수와 현두륜은 국내에 입수된 가장 최근의 북한 경제 관련 개별법 조문 변화 등을 비교하고 특징을 분석했다. 현두륜이 농장법, 기업소법, 인민경제계획법을 중심으로 살펴봤다면, 양문수는 3개 법 이외에도 양정법, 상업법, 재정법, 무역법을 추가적인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공통적으로 두 연구자 모두 2020년 이후 북한의 경제정책이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고 설명한다.⁴⁾

-
- 1) 추석용, “북한 ‘사회주의 기업책임관리제’의 추진과정과 특징.” 『북한학연구』 제18권 제1호, 2022, pp. 5~49.
 - 2) 박진우, “2019년 개정 북한 헌법에 대한 고찰-2016년 개정헌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홍익법학』 제20권 제3호, 2019, pp. 173~197; 법제처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북한의 경제법제 소식-2019년 북한 사회주의헌법 개정의 주요 내용 및 특징.” 『남북법제 소식』 2월호, 2020, pp. 15~25; 박정진, “제2기 김정은 정권의 정책방향과 권력 조직의 구조: 최고인민회의의 14기 1차 회의를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정치』 제36권 제1호, 2020, pp. 257~295.
 - 3) 최은주, “김정은 집권 시기 경제법제의 변화와 전망.” 『세종정책연구』 2022-1, 2022, pp. 153.
 - 4) 양문수, “제재·코로나 시기 제·개정 법령을 통해 본 북한의 경제정책.” 『국가안보와 전략』 제23권 3호, 2023, pp. 109~152; 현두륜,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 경제 관련 법령의 변화.” 『북한법연구』 Vol. 29, June, 2023, pp. 61~97.

본 연구는 2019년 사회주의 헌법 개정 이후 경제 관련 주요 법령 정비 현황을 정리하고 개정 내용의 특징을 분석하여 북한의 경제관리방식 변화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국가정보원에서 제공 중인 『북한법령집』에서 2022년 10월까지 제·개정된 법령 자료를 활용할 것이다. 먼저 제2장에서는 2019년 사회주의 헌법 개정 배경과 의미를 검토한다. 다음으로 제3장에서는 사회주의 헌법 개정 이후 개정된 경제 관련 개별법들의 특징을 검토한다. 제4장에서 사회주의 헌법 개정과 북한의 경제관리방식의 변화를 개정법의 특징을 중심으로 살펴본 후 분야별 경제관리방식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를 검토한다. 이를 통해 향후 북한 경제관리방식의 지속, 또는 변화 가능성을 전망한다.

II. 2019년 사회주의 헌법 개정 배경과 의미

과거 북한 당국은 헌법보다 당의 정책을 우선시했으나, 1972년 사회주의 헌법 제정 이후 2019년까지 개정을 거듭해 오며 인치 중심의 통치방식에서 벗어나 법치 중심으로 변화하려는 모습을 나타냈다.⁵⁾ 일부 국내 북한법 연구자들도 김정일 시기에 들어와 대중용 법전을 공식적으로 발간하고 사회주의 법제 사업의 강화를 강조하며 법제 정비를 활발히 추진해 온 것을 근거로 북한이 법치주의로 나아가고 있다는 데 의견을 모은다.⁶⁾ 이러한 관점에서 사회주의 헌법에는 북한 당국이 추구하고자 하는 정책 방향이 담겨 있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사회주의 헌법이 최근까지 개정을 거듭하며 북한 현실과 괴리된 내용에서 벗어나 북한 주민들의 삶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내용들로 변화해 온 점에서 사회주의 헌법은 북한 사회의 현실을 관찰할 수 있는 주요한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본다.

5) 박선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의 제정과 개정 과정을 통해 본 북한헌법에 관한 연구.” 『公法學研究』 제16권 제4호, 2015, pp. 59~60.

6) 황의정, “김정은 시대 북한식 사회주의법치의 의미와 한계 - 법의 지배의 일반론적 시각을 중심으로.” 『東北亞法研究』 제12권 제3호, 2019, pp. 117~130.

2019년 사회주의 헌법 개정 배경에는 3대 세습통치를 정당화하기 위한 사상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이 엿보인다.⁷⁾ 다만, 김정은은 김정일 시기의 통치이념인 선군사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정책을 법률에 반영했다는 점에서 정상국가화를 시도하고 형식적 법치주의를 취하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⁸⁾ 그러나 무엇보다도 2019년 사회주의 헌법 개정에 영향을 끼친 것은 국제관계 변화에 따른 대내외 정치 및 경제 환경이라고 판단된다. 2016년 이후부터 강력한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가 지속되고 있었고 2018년부터 북한과 미국의 관계가 변화되고 있었기에 가능한 설명이다.

박진우 또한 미국과의 관계를 포함한 대외적 상황의 변화, 김정은 체제의 공고화와 위상 확립, 체제 내부 결속력 강화를 2019년 사회주의 헌법 개정의 배경이라 분석한다. 북한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김정은이 북한 당국을 대표하는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국제사회에 각인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향후 미국과의 평화 협정체결 국면에서 김정은이 협정체결의 당사자로 나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외교적 상황 변화를 반영해야 할 필요에 따라 2019년 사회주의 헌법이 개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⁹⁾

종합하면 북한 당국이 2019년 사회주의 헌법을 개정한 목적은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 강화에 따라 김정은 체제를 공고화하고 위상을 확립함과 동시에 경제발전의 집중, 정상적인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같은 개정 배경을 지닌 2019년 사회주의 헌법은 특히 경제 부문에 있어 2016년 사회주의 헌법에 비해 정보화, 과학기술, 실리보장 원칙, 내각의 역할 강화,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명시, 신용준수 및 무역구조 개선을 강조하고 있다.¹⁰⁾

7) 북한 당국이 사회주의 헌법을 개정한 배경에 대한 분석은 조재현, “북한헌법 개정의 배경과 특징에 관한 헌법사 연구.” 『미국헌법연구』 제29권 제3호, 2018, pp. 276~289. 참조

8) 류지성, “최근 북한입법의 변화 분석.” 『북한법연구』 제28호, 2022, p. 238.

9) 박진우, “2019년 개정 북한 헌법에 대한 고찰- 2016년 개정헌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홍익법학』 제20권 제3호, 2019, pp. 181~185.

10) 법제처, “2019년 북한 사회주의헌법 개정의 주요 내용 및 특징”, pp. 15~25.

Ⅲ. 경제 관련 개별법 주요 개정 내용과 특징

양문수는 북한 당국이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와 포진담당제 등을 포괄하는 우리식경제관리방법의 시행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김정은 집권 이후부터 2015년까지 법률을 집중적으로 제·개정했다고 설명한다. 그의 연구는 해당 시기에 개정된 법령 중 경제분야 핵심 법령의 개정 내용을 분석하여 우리식경제관리방법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제공하고 있다. 해당 연구에서 분석 대상으로 삼은 경제분야의 핵심 법령은 농장법, 기업소법, 무역법, 인민경제계획법, 자재관리법, 재정법, 중앙은행법, 상업은행법이다. 이들 경제 관련 법령을 통해 나타난 우리식경제관리방법의 특징들은 어느 정도 사회주의 국가의 경제개혁과 닮아 있다고 설명하고 7.1조치 등 이전 시기의 경제개혁 조치보다 진전된 것이라고 평가되고 있다.¹¹⁾ 경제분야 핵심 법령으로 선정한 이들 8개 법령 내용의 변화를 통해 북한의 경제개혁 조치의 성격과 특징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참고할 만한 자료로 판단된다. 다만 이들 법령 중 자재관리법, 중앙은행법, 상업은행법은 2015년 개정 이후 2022년까지 제·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본 연구의 분석 대상에서 제외한다. 한편 이들 3개 법령을 제외한 나머지 5개 법령은 2015년 개정 이후 2020년 또는 2021년에 다시 개정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김정은 집권 초기에 도입한 경제 개선 조치들이 계속해서 수정·보완되고 있으며 이는 해당 조치도 현실과 조응하여 변화 또는 강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루어 짐작할 수 있듯이 이들 5개 법령을 같은 경제 관련 법령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각각의 법령이 관할하고 있는 경제단위와 법령의 변화가 지닌 의미에는 차이가 있다. 북한 당국이 법령에서 밝히고 있는 개별 법의 사명을 통해 이들 법령의 층위를 파악할 수 있다.¹²⁾

11) 양문수, “김정은 집권 이후 개정 법령을 통해 본 ‘우리식경제관리방법.’” 『통일정책연구』 제26권 2호, 2017, pp. 81~115.

12) 국가정보원 『北韓法令集(上), (下)』 2022년 10월, http://nis.go.kr:4016/AF/1_2_1.do (검색일: 2023.6.20.).

북한 당국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특징으로 첫째, 당국이 모든 생산설비, 자재, 원료를 장악하고 생산과 소비를 비롯한 모든 경제생활을 계획적으로 조직, 진행한다고 밝히고 있다. 두 번째 특징으로 당국의 지도를 통해 경제 부문과 생산 단위의 균형이 합리적으로 유지됨으로써 경제발전이 가속화된다는 점을 들고 있다.¹³⁾ 이처럼 북한이 생각하는 계획경제의 운영 원리에 따라 경제 관련 개별법의 기능과 역할을 분류하면, 인민경제계획법은 가장 높은 층위에서 경제 전반에 대한 계획을 수립, 관리하는 기본 토대이다. 반면에 농장법과 기업소법은 인민경제계획법을 통해 하달된 단위별 계획을 수행하는 하부 단위를 관할하는 법령에 해당한다. 농장법과 기업소법이 북한의 대내경제를 범위로 한다면 무역법은 대외경제를 범위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한편, 재정법은 모든 경제단위에 필요한 자금을 계획, 분배하기 위한 지침으로 인민경제계획 수행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면 2019년 사회주의 헌법 개정 이후 경제 관련 개별 법령의 내용이 종전에 비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보자. 경제 관련 개별법들의 주요 개정 내용에서 도출되는 특징들은 북한 당국이 경제 현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며 이는 경제관리방식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1. 인민경제계획법

인민경제계획법은 1999년 제정 이래 2015년 네 번째 개정을 거쳐 2021년에 다섯 번째로 개정되었다. 종전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제3장(인민경제계획의 비준과 시달) 내용이 제2장(인민경제계획의 작성, 시달)에 포함되어 총 5장 구성으로 개정되었다. 조항은 47조에서 62조로 증가하여 새로운 내용 추가가 많은 편이다. 개정법에 반영된 주요 내용은 계획 목표 달성 중시, 계획수행의 분권화, 계획수행 주체의 책임 강화이다.

13) 백과사전출판사, 『광명백과사전 5 경제』, 평양 : 백과사전출판사, 2010, p. 34.

(1) 계획 목표 달성 중시

개정법에서 주목해야 할 용어가 있다. 개정법 전체 내용에서 ‘수행’이라는 용어가 ‘실행’을 대체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조선말대사전』은 실행을 “(무엇을 이룩하기 위하여) 실지로 행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수행을 “일을 해내는 것”으로 정의한다.¹⁴⁾ 두 용어의 차이점은 목적 달성에 대한 기대 정도에 있다. ‘실행’은 일을 진행했으나 최초 계획했을 때의 목적을 이루지 못한 경우도 포함하는 반면 ‘수행’은 최초 계획에 따라 일을 진행해 그 목적을 달성한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경제계획의 실행에서 수행으로, 실행총화에서 수행총화로 바꾸어 개정법에 반영한 것은 계획한 목표를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의무와 책임이 부과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계획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수행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은 개정법 제10조(인민경제계획작성에 나서는 기본요구)에 제시된 경제계획작성을 위한 구체요건에서 발견할 수 있다. 종전법에서는 경제계획을 고정재산 확대, 자원개발, 과학기술 발전을 고려하여 작성했다. 그러나 개정법에서는 경제계획 수행 여부에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경제계획 작성 기준부터 구체적이다. 개정법 제13조(계획기준의 제정)는 당국의 정책을 경제계획 작성의 기준으로 삼았던 종전 방식 대신에 노동량, 물자 소비 및 자금지출기준 등 기관, 기업소, 단체가 소속기관에 등록된 현실적인 기준을 갖대로 계획을 작성하도록 개정했다. 세부적으로는 제14조(인민경제계획작성을 위한 기초자료)에서 국가계획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가 제출한 자료를 기반으로 경제계획을 작성하되, 이 밖에 통계기관, 재정기관, 은행, 노동행정기관, 가격기관이 제출하는 자료를 추가로 반영하여 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기관, 기업소 등 계획수행의 당사자를 비롯하여 경제계획 수립에 관련된 다양한 기관들의 자료를 종합, 활용함으로써 계획을 정교화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낸다. 개정법 제15조(계획정보자료기지의 구축) 신설은 수집한 경제계획자료를 누적하여 분석 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획수립의 정교화를 뒷받침하고 있다.

14) 사회과학출판사, 『조선말대사전(증보판) 2』,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17, p. 1522·p. 1682.

(2) 계획수행의 분권화

계획기관을 구분하고 지표를 분담한 것에서도 계획 목표 수행을 위한 단위별 역할에 대한 명확한 구분을 엿볼 수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를 신설하여 계획기관을 국가계획기관, 중앙계획지도기관, 지방계획기관으로 구분하고 있다. 국가계획기관은 계획을 총괄하고 중앙계획지도기관과 지방계획기관은 각각 중앙과 지방의 목표 지표 달성에 주력하는 구조로 체계화한 셈이다. 개정법 제16조(인민경제계획지표의 등록), 제18조(인민경제계획지표의 분담)는 이러한 단위별 역할에 관한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 특히 제23조(군중토의)에는 중요지표 계획 시 토의를 거쳐 당국에서 조달해야 할 몫과 기업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할 몫을 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계획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실을 감안하여 기업 자체의 노력과 당국의 지원이 분담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나타낸다.

경제계획 수행의 분권화는 제31조(인민경제계획수행의 기본요구) 개정 내용과 제35조(인민경제계획수행을 위한 사업조직)의 신설 내용에도 나타나 있다. 경제계획의 수행 주체를 국가계획기관을 제외한 기관, 기업소, 단체로 한정하고 있으며, 이들에게 구체적인 계획수립 및 사업 조직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3) 계획수행 주체의 책임 강화

주어진 권한이 확대된 만큼 책임도 강화했는데, ‘총화’의 중요성을 강조한 제45조(인민경제계획수행총화준비)에서 그 내용을 찾을 수 있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생산 단위 및 계획별 수행자료를 전년도 실적 자료와 비교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특히 총화에서는 계획수행과정에서 나타난 성과, 결함, 교훈 등을 분석하여 수행 주체들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다음 시기 목표 달성을 위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수행실적도 계획수립 시 통계기관에 등록한 계획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결과를 계획수행 주체들에게 전달하도록 했다(제48조). 계획에 없는 제품, 건설,

일체 서비스 등을 통해 달성한 실적은 평가에서 제외하고(제50조) 계획보다 초과한 실적에 대해서는 정치적, 또는 물질적으로 평가한다는 조항도 신설하였다(제51조). 종전과 달라진 점은 계획수행 주체가 자체적으로 평가한 실적과 비교할 수 있도록 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부분이다. 객관적 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를 계획수행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만들어 평가 결과에 대한 책임을 이들에게 부과하고 있다.

경제계획 작성과 수행에 관한 일련의 과정에는 감시와 통제가 있다. 특히 개정법에서는 국가계획기관 대신에 검찰기관을 감독통제기관으로 지정하고, 계획수행에 필요한 인원, 설비, 자재 관련 계획과 계약규율준수 여부, 총화 및 실적보고 등에 대한 법적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도록 했다(제56조).¹⁵⁾ 아울러 종전법에서 금지행위에 대한 처벌 조치를 행정적 책임과 형사적 책임으로 나누어 수록한 반면 개정법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 주민이 경제계획 수행 과정에서 금지해야 할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제57조). 개정법에 수록한 금지행위 중 눈에 띄는 점은 개별 단위의 이익을 중시하고 특수기관이 산하 기업의 수입을 가로채는 등 집단주의 원칙을 어기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추가한 점이다. 금지행위에 대한 처벌도 민사적 책임, 벌금처벌, 중지처벌, 경고, 무보수노동, 노동교양, 강직, 해임, 철직처벌, 형사적 책임으로 세분화하여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집행하도록 했다(제58~62조).

2. 재정법

재정법은 1995년에 제정된 후 2, 3년 간격으로 비교적 정기적인 개정이 있었다. 2015년 4월 개정된 재정법은 6년 만인 2021년 8월에 다시 개정되었으며, 총 11번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북한에서 재정의 개념은 “국가 및 기관, 기업소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화폐자금을 조성하고 분배, 이용하는 과정에서

15) 북한 헌법에 수록된 검찰소의 임무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주민들이 법을 정확히 지키는지를 감시하는 것이다. 국가정보원, 『北韓法令集(上)』 2022년 10월, http://nis.go.kr:4016/AF/1_2_1.do(검색일: 2023.6.20.).

이루어지는 경제관계”로 정의한다.¹⁶⁾ 재정의 사전적 의미에서 파악할 수 있듯이 시장경제체제와는 달리 기업의 경영활동도 재정에 포함하고 있다. 중앙의 재정통제는 기업의 생산 계획, 자원 및 소득분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경제 전반에 대한 계획을 가능하게 한다. 총 5장 64조로 구성된 2021년 개정 재정법은 2015년 재정법보다 9개 조항이 늘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예산납부 방식 변경, 재정관리권 신설 및 경영자금 손실 보상, 부문예산제 실시, 재정통제 강화 등이다.¹⁷⁾ 개정 내용에서 도출된 특징은 당국의 지원 축소, 생산단위의 권한과 책임 동시 확대, 재정 통제 강화로 분류할 수 있다.

(1) 당국의 지원 축소

개정된 재정법에서 관심 깊게 볼 부분은 ‘예산수입의 원천’이다. 종전에는 예산수입의 원천을 ‘순소득 또는 소득’을 기준으로 했다면 개정법에서는 순소득에 해당하는 ‘사회순소득’으로 변경했다. 1995년 재정법 제정 이후 예산수입 원천 기준의 변화는 개혁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경향성을 보였는데 개혁 이전 또는 개혁 후퇴의 시기에는 ‘순소득’ 기준을 적용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2021년에 다시 ‘순소득’으로 예산수입 원천 기준을 변경한 것은 개혁의 지체 또는 사회주의 원칙의 강화로 해석할 수 있다.¹⁸⁾

재정수입 확대를 위한 노력은 모범 단위에 제공하는 재정적 특전 또는 특혜를 지방예산에서 국가예산으로 확대한 내용에서 발견할 수 있다. 개정법 제20조 ‘재정적 특혜’ 조항을 신설하여 국가예산납부 이후 남은 수입의 일정 비율을 우대기금으로 적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예산수입계획초과분을 자체충당금, 장려금, 상금기금 등 다양한 용도로 처분했던 종전과 비교하면 같은 몫의 남은 수입을 모범 단위에 북한 당국이 제공하는 형태로 변경된 셈이다.

한편 개정 재정법에서는 기업 소득에 대한 예산납부 기준이 종전 ‘순소득

16) 사회과학출판사, 『재정금융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5, p. 1073.

17) 최지영, “대북제재 장기화와 북한의 재정금융 제도 변화.” 북한연구학회 동계학술회의 발표문(2022년), pp. 179~192.

18) 최정옥, “북한 조세·재정 법제의 최근 동향.” 『통일과 법률』 제53호, 2023, pp. 132~133.

또는 소득'에서 '소득'으로 변경되었다. 수입은 소득과 같은 개념으로 판매 수입 전체에서 생활비를 제외하고 판매원가를 차감한 것이다. 반면에 순소득은 수입(소득)에서 생활비까지 차감한 몫에 해당한다. 따라서 적용 세율이 같다고 가정할 경우, 과세 기준이 수입으로 변경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순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 보다 더 많은 몫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물론 적용 세율을 법에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실제로 기업 부담 몫이 늘어났는지는 북한 당국이 추가로 발표하는 다른 내용들을 통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개정법 제38조는 종전과 달리 기업이 국가예산납부 이후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자체과학기술발전자금, 상금기금 등에 관한 내용을 삭제했다. 게다가 기본건설자금, 대보수자금, 과학기술발전자금은 일차적으로 국가예산에서 지출한 후 나머지 부분을 자체자금으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개정법에서는 해당 조항이 모두 사라지고 오히려 경영수입조성(제37조)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경영수입 증대를 위해 자체 자원을 조달하도록 했다. 중앙의 재정 부담을 축소하고 생산단위의 자체 자금의 적극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볼 수 있다.

(2) 생산단위의 권한과 책임 동시 확대

개정법 제39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경영손실을 자체로 보상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종전과 다른 점은 은행이나 주민으로부터 조달한 자금과 관련한 손실도 자체적으로 보상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된 점이다. 또한 재정법 위반 시 부과하는 처벌이 행정적 또는 형사적 처벌에 국한되었으나 개정법에서는 민사적 처벌 조항을 신설했다. 기업의 경영 권한 확대와 함께 민간으로부터의 경영자금 조달이 일반화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자체 책임도 강화하고 있다.

예산집행에서도 부문에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있다. 중앙예산과 지방예산으로 나누어 집행했던 종전과 달리 개정법에서는 '부문예산제'를 도입한다. 중앙예산을 부문별로 나누고 부문예산의 수입과 지출에 균형을 자체적으로 맞추어 집행하도록 했다. 중앙예산의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한 부문

의 적자를 다른 부문의 흑자로 상쇄하는 것이 아니라 부문별로 알아서 균형을 맞추어 전체적인 균형을 이루라는 의도로 볼 수 있다.

(3) 재정 통제 강화

개정 재정법에서도 당국의 통제 강화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재정계획에 대한 승인을 해당 기관의 승인이 아닌 상급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해당 재정 기관에 등록된 후 재정회계문건은 증빙문건을 기초로 작성해야 한다. 또한 계획 실패를 방지하기 위해 재정총화는 생산총화와 결부하여 진행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재정법을 위반할 경우 행정적, 형사적 책임을 부과하던 방식에서 민사적 책임도 추가되었다. 특히 법을 위반할 경우 사안에 따른 처벌을 제시하고 있는데 변상처벌, 벌금처벌, 중지처벌, 철직처벌 등으로 매우 구체적이다.

한편, 재정사업에 대한 통제는 경영활동에 대한 재정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에 덧붙여 전문자격과 급수를 가진 재정인력을 양성하고 이들을 통해 재정업무가 진행되도록 하여 중앙집중적 예산관리가 가능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3. 농장법

농장법은 2015년 개정 이후 2020년 2월, 2020년 7월, 2021년 3월, 2021년 11월 총 네 차례의 개정이 있었다. 총 4장 62조로 구성된 2015년 농장법은 2021년 개정을 통해 총 4장 73조로 전체 조항 수가 늘었다.¹⁹⁾ 농장법의 주요 개정 내용에서는 북한이 농업생산 정상화를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 기존 조항을 분리하여 개별 조항으로 만든 분리신설 조항을 포함한다.

(1) 당국의 지원 확대

가장 최근에 개정된 농장법(2021) 제6조에서는 ‘농장의 물질 기술적 토대 강화 원칙’을 설명하고 있다. 농장 형편 개선을 위한 방법으로 농장에 대한 당국의 투자 확대, 농장의 자립성 강화, 농업 생산의 정상화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개정 이전의 농장법(2015)에 수록된 ‘농장에 대한 지도원칙’은 당국의 지도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을 뿐 농장 지원에 대한 구체 내용을 찾기 어렵다. 농장 스스로 ‘잘 살아남는 방법’을 찾아야 했던 이전의 환경에서 당국의 지원을 기대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것이다.

2022년 신년사를 대체하여 개최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노동당 제8기 4차 전원회의’에서도 농업 분야의 역량 강화를 대내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농업 분야는 토의 시간을 별도로 부여하고 김정은이 직접 보고문건을 발표할 만큼 식량 증산을 위한 정책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보고문 내용에는 협동농장에 복한 당국이 대여한 종자, 기계 기구, 비료 관련 상환되지 않은 자금이 있는 경우 해당 대금을 모두 면제하고, 농장 소속 근로자에 대한 생활용품 지원하는 등 농민들의 생산 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특혜 조치 도입에 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²⁰⁾

자금 조달에 편의를 제공하여 농업 분야를 지원하는 방식도 개정법에 반영했다. 개정법 제49조에 수록된 ‘자금이용 및 재정총화’에서는 은행이 농장에 필요한 영농물자 구매 자금을 낮은 이자로 대출하고, 농장이 요청할 경우 상환일 연장도 가능하다. 대출, 상환유예가 가능하게 된 것은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고 예치금 범위 안에서 구매 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시중에서 유통되는 남은 자금을 직접 끌어와 활용하던 기존 방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간 조치라고 볼 수 있다. 자금 이용과 활용에 있어 자율성이 확대된 것을 의미한다.

20) “우리식 사회주의 농촌발전의 위대한 새시대를 열어나가자.” 『노동신문』 2021년 12월 31일.

(2) 농장 자체 경영권 부여

농업생산의 정상화를 위한 방안으로 개정법에 수록하고 있는 내용은 농장에 경영권을 부여하고 자율성을 확대하는 것이다. 개정법 제22조에 신설된 ‘농장의 경영권’에는 계획권, 생산조직권, 관리기구 및 노력조절권, 생산물처리권, 자금 이용권 등 경영활동에서의 중요한 권한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권한을 농장 스스로가 행사한다는 점에서 커다란 변화로 해석할 수 있다.

먼저 계획권에 관한 사항으로 제23조 ‘농업생산계획의 작성, 실행’에서는 농장이 생산 계획의 실질적인 수행을 위해 현실을 감안하여 농작물의 배치, 파종면적, 수확량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물론, 자체적으로 수립한 계획은 관련 기관의 합의를 얻어야 하지만 국가계획기관에서 작성한 농업생산 계획대로 무조건 따라야만 했던 이전에 비해 자율성이 크게 향상된 모습이다. 마찬가지로 개정법 제24조에서는 생산조직권을 농장에 부여함으로써 농업생산 계획을 실제로 달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농작물의 종류와 품종을 선택할 수 있으며, 재배형식과 파종면적에서부터 영농시기와 방법까지 자체 실정에 맞게 정할 수 있다는 뜻이다.

다음으로 경영권 중 관리기구 및 노력조절권에 대한 내용은 제21조 ‘농장의 관리성원’에서 규정하고 있다. 개정법에서는 농장의 경지면적과 생산량에 따라 표준 관리기구 범위 내에서 실정에 맞게 검직 등을 통해 관리기구를 줄일 수 있도록 하였다. 과도한 관리 인력보다 실제 생산에 참여하는 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농장은 관리자의 직무와 책임을 명확하게 정해 주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여 차후에 발생할 수 있는 생산 차질 등에 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이밖에 농장의 자율성이 확대된 측면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은 생산물처리권을 농장에 부여한 점이다. 특히 개정법 제26조부터 제29조에 이르기까지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포전담당책임제’ 시행은 농장의 자율성 확대를 통한 생산 정상화를 실현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포전담당책임제’는 분조보다 더 적은 인원으로 구성된 ‘포전’ 단위로 경작지를 배분하고, 작업 일수와 포전의 생산량에 따라 분배 몫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이는 담당 포전

에서 산출한 생산량에 따라 농장원 개인의 몫이 결정되어 생산성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 농장 운영 단위를 작업반, 분조, 포전별 담당농장원으로 편성하고 단위별로 책임져야 할 의무와 역할을 명시함으로써 ‘일한 만큼 가져가는’ 투명한 분배 체계가 마련된 것이다. 포전 배분에 관한 사항도 농장원의 의사를 반영하는 한편, 농장과 작업반이 상위 지도기관이 부여한 농업생산계획과 수매계획을 변경하여 작업반과 분조에 함부로 시달할 수 없도록 하였다. 농장원 개인의 의사를 반영하고 상위 기관이 권한을 남용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인의 생산성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

또 다른 변화는 농장원총회를 통해 결정하는 사항들이 늘어난 점이다. 개정법 제58조(종자와 집짐승먹이의 조성, 리용)와 제59조(농장 생산정상화 몫의 조성, 리용)에 공통적으로 신설된 내용으로 가축 사료, 종자 및 생산 규모 등에 관한 사항을 농장원총회에서 토의를 거쳐 정하도록 한다는 점이다. 농장의 결산 분배 방식에서도 분배 관련 내용을 농장원총회에서 공개하도록 개정하였다. 일방적인 지시가 아닌, 실제 생산작업에 참여하는 농장원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개인의 자율성과 권한이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3) 자율성 확대에 의한 부작용 방지 및 통제

농장의 자율성 확대는 개인의 생산성을 증대시킬 수 있으나 농업생산 및 경영에 대한 관리와 통제는 어려워질 수 있다. 개인 이익에 관심이 커질수록 공동의 목표 달성에는 소홀해지기 때문이다. 이처럼 자율성 확대에 의한 부작용 방지를 위한 조치를 개정법에 반영하고 있다. 먼저, 개정법 제43조(영농설비의 리용)와 제46조(영농자재 리용의 효과성 제고)는 설비 및 자재 유용 금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농사와 관련 없는 다른 사업에 설비와 자재를 이용할 수 없으며 낭비해서도 안 된다. 또한 생산 의욕을 저하시키는 행위나 생산물을 불법적으로 처리할 수 없다. 개정법 제56조(농업생산물의 수매)에서는 목표 생산량을 초과한 분조에서 생산량을 가져와 수매계획을 맞추는 등 농장원들의 생산 의욕을 떨어뜨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농업생산물을 설비 및 자재 구입이나 다른

목적에 위해 불법적으로 처리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개정법 제64조에서는 부득이한 경우 농장원을 농사 이외의 다른 사업에 동원할 수 있도록 허용했던 기존 방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해당 내용을 아예 삭제했다.

개정법 제72조(행정적 책임)는 규칙 위반에 대한 벌칙, 제재 조항으로 기존 14개 항목에서 19개 항목으로 증가했다. 처벌 종류도 경고, 엄중경고처벌, 무보수노동, 노동교양처벌, 강직, 해임, 철직 등으로 구체화했다. 개정법에 반영된 처벌 내용은 자율성 확대에 따른 관리, 통제의 필요성을 반영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생산에 차질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들에 대한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4. 기업소법

기업소법은 2015년 두 번째 개정 이후 2020년에 개정이 이루어졌다. 총 5장 57조로 구성된 기업소법은 신설 조항 없이 기존 조항에 대한 개정만 진행되었다. 기업소법의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절약을 기초로 한 기업 경영관리 개선 방안 제시, 기술개발 등을 통한 생산 확대 강조, 국가경제발전전략과 기업경영전략의 밀접한 연계 증시다.

(1) 기업 경영관리 개선 방안 제시

개정 기업소법 제4조(기업소의 경영원칙)에서는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실시를 통한 최대 실리 확보를 경영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 기존 법에서 변경된 내용은 절약에 대한 강조가 추가된 점인데 대북제재,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악화 현실을 반영하여 인원, 에너지, 원가, 부지를 절감하는 방식의 기업 경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업 경영관리 개선의 중요성은 제5조(기업소의 물질 기술적 토대 강화 원칙)와 제8조(기업소 사업에 대한 지도원칙)에도 반영되어 있다. 기업 생산을 확대하고 경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북한 당국의 투자와 관리가 필요하지만 기업 스스로 경영관리를 개선하는 노력도 중요함을 강조한다.

기업 자체의 경영관리 개선 작업의 일환으로 먼저 개정법 제25조(기업소의 사업준칙작성)에서는 사업준칙 작성의 주체를 ‘행정간부회의’에서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실시위원회’로 변경한다. 신설 위원회에 기업의 경영 기준으로 삼는 준칙 작성 권한을 부여하여 기업의 실제 운영에서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가 체계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 개정법 제31조(인민경제계획의 실행)에서 계획목표설정, 주문계약방식, 사업분담 등 기업이 자체적으로 경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제38조(재정관리)에서는 경영활동 자금운영계획을 기업이 설계하도록 하였다. 사업 및 자금 계획수립 권한이 모두 기업에 있다는 점에서 자율성 확대를 엿볼 수 있는 획기적인 변화이다. 제40조(종업원들의 책임성과 창조력 발양대책)에서 기업 소속 종업원 간 경쟁을 촉진하고 개인 실적별 평가를 도입하고, 제48조(로동정량의 제정과 적용, 로동보수)에서 개인의 작업량, 생산실적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도록 개정된 내용 또한 기업 경영에서의 자율성이 확대된 측면을 반영하고 있다.

다음으로 기업 경영관리 개선작업과 함께 기업설립 촉진을 위한 방안도 개정법에 반영되어 있다. 제16조(기업소등록증의 발급)에서 기업등록(설립) 심사 검토 기간을 30일에서 7일로 단축했는데, 이는 기업설립에 소요되는 시간을 절감함으로써 더 많은 기업이 생산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 한편, 제19조(기업소등록증의 반납)은 기업등록증 교부 이후 통계기관을 거쳐 은행에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된 것이 눈에 띈다. 기업을 해산(청산)할 경우에도 사회안전기관 뿐만 아니라 통계기관, 은행에도 해당 사실을 신고하도록 개정했다. 기업의 설립과 해지 시 통계기관과 은행을 거치도록 법을 개정된 목적은 기업에 대한 북한 당국의 통제, 관리의 필요성에서 찾을 수 있다. 이미 2014년 기업소법 개정을 통해 기업은 재정관리권을 갖고 경영자금을 은행에서 대출하거나 시중의 자금을 활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다시금 법 개정을 통해 계좌 개설과 통계기관 경유를 의무화한 것은 기업 경영자금의 흐름을 북한 당국이 쉽게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앞서 기업에 계획권과 재정관리권을 부여하여 자율성이 확대된 반면, 기업이 수립한 계획은 통계기관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고 기업의 수입과 생산물을 경제계산체계에 정확히 반영

해야 하는 통제적 측면이 있다. 이처럼 개정 기업소법은 기업 경영관리 개선을 통해 생산활동을 촉진하는 동시에 자금 운용 등을 포함한 기업 경영활동 전반에 대한 북한 당국의 통제를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2) 기술개발을 통한 생산 확대

기업의 생산 확대를 위한 방법은 경영관리 개선 이외에도 새로운 기술개발 및 향상을 통한 제품생산량 증가가 있다. 개정법 제34조(제품개발)는 신제품 개발을 위한 전문기술개발조직을 편성하고 필요한 설비, 자재, 자금을 지원하도록 개정되었다. 심의를 거쳐 통과된 신기술, 신제품은 생산에 즉시 도입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제36조(인재관리)에서는 기업에 원격교육망과 재교육체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과학기술보급실 운영을 통해 기업 인재를 육성하도록 주문하고 있다. 제43조(기술관리)에는 과학기술의 최신성과를 생산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북한 당국이 과학기술 적용을 통한 새로운 제품개발, 기업 인재 육성을 기업 생산 확대의 중요 요소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국가경제발전전략과 기업경영전략의 연계

북한 당국이 경제발전전략 목표 달성을 위해 기업의 역할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개정 기업소법에서 발견할 수 있다. 제30조(경영전략, 기업전략의 작성)에서는 경제발전전략을 바탕으로 기업 경영전략을 수립하도록 했다. 기업의 경영 목표 달성은 그 자체의 의미를 넘어 전체 경제발전전략을 실현하는 기능을 담당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 자체의 이익 추구를 위한 경영전략은 애초에 계획할 수 없다는 것으로 경영 자율성 확대를 통한 기업의 성장을 북한 당국 전체의 경제발전전략 목표 달성과 연계하고 있다.

5. 무역법

무역법은 1997년 제정 이후 아홉 번의 개정 과정을 거쳤다. 특히 김정은 집권 이후 2020년 3월 개정을 포함하여 다섯 번의 개정이 있었다. 주기적으로 법제 정비를 진행해 왔다는 점에서 무역에 대한 북한 당국의 관심이 높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2020년 개정 무역법은 총 5장 59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8년 개정법에 비해 조항은 3개 늘었으나 조항별로 수록한 내용은 보다 구체적인 것이 특징이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무역 범위 구체화, 무역거래 관련 당국의 통제 강화이다.

(1) 무역 범위 구체화

2020년 개정 무역법 제2조(무역의 기본원칙)에서는 무역구조 개편에 중점을 두고 있다. 개정법에서는 무역구조와 방법 개선의 목적이 가공품수출, 기술무역, 서비스무역의 발전에 있음을 종전에 비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가공무역은 자본과 기술이 부족한 개발도상국가들의 주요 초기 수출 확대 전략으로 활용되어 왔으며, 북한의 수출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²¹⁾ 가공품 수출은 외국에서 자본재 및 중간재를 전부 또는 일부 수입하여 조립, 가공한 후 다시 수출하는 형태로 높은 기술 수준을 필요로 하지 않고 노동집약적 생산과정이 주를 이루기 때문이다. 개혁개방 초기 중국도 노동력이 풍부하지만 기술 및 자본이 부족한 상태에서 국제자본과 중국의 풍부한 노동력을 결합할 수 있는 가공무역을 경제성장력의 원동력으로 삼았으며 경제성장 이외에도 해외자본 유입, 산업구조 고도화, 고용 확대, 선진기술 유입 등 긍정적 성과를 거두었다.²²⁾ 한편 금융, 운송, 물류, 정보기술서비스, 컨설팅사업 등 상품을 제외한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무역과 서비스 무역은 경제 글로벌화의 가속으로 국제간 교역이 확대됨으로써 중요성이 강화

21) 정승호·김바우, “북한 가공무역의 기술수준 분석: 중국과의 비교.” 『비교경제연구』 제28권 제1호, 2021, pp. 168~169.

22) 하현수, “중국의 가공무역관련 주요 정책 변화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12권 1호, 2011, p. 326.

되고 있다.²³⁾ 이처럼 국제거래 확대 상황에서 무역분야에서의 북한의 강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가공품수출, 기술무역, 서비스무역 발전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무역구조 및 무역방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을 개정법에서 강조하고 있다.

(2) 무역 통제 강화

개정 무역법에 반영된 가장 큰 변화는 북한 당국의 통제가 강화된 점이다. 양문수는 2012년과 2015년에 개정된 무역법의 경우, 무역 분권화의 뚜렷한 진전을 엿볼 수 있다고 설명한다.²⁴⁾ 그러나 2020년 개정법은 무역의 중앙집권화를 재강조하고 있다. 제2조(무역의 기본원칙)에서 지방무역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삭제되었으며, 제3조(다각화, 다양화원칙)에서는 무역 대상을 여러 국가 및 회사에서 여러 국가 및 지역으로 변경하였다. 지방이 자체적으로 무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허용했던 종전의 방식을 폐지하고 중앙의 승인을 거처도록 했다는 점에서 통제를 강화한 모습을 보여준다. 마찬가지로 해외 개별회사 단위와 무역 거래가 가능했던 상황에서 해외 지역으로 변경함으로써 확대했던 무역 대상의 범위가 다시 축소되었다.

제6조(무역에 대한 지도원칙)에서도 북한 당국의 역할을 무역에 대한 중앙집권적 지도와 통제의 강화라고 제시하고 있으며, 무역에 대한 통제 강화적 측면은 다수의 조항 내용에서 찾아볼 수 있다. 먼저, 영업허가 절차에 조건이 추가되었다. 종전에는 무역거래를 희망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앙무역지도기관에 영업허가 신청 문서를 제출하면 됐다. 그러나 개정 무역법에서는 업종과 지표에 따라 등록된 수출품 생산기지등록증을 첨부하도록 했다. 이는 수출품에 대한 원산지 확인 절차를 추가해 불법적인 생산, 유통 과정을 거쳐 물품이 거래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한다. 제15조(무역거래범위)에서 거래 금지 범위를 확대한 것에서도 무역거래에 관한 통제를 강화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다. 허가받지 않은 무역거래 뿐만 아니라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출원천을 거래할 수 없

23) 안순기, “한국과 중국의 서비스무역 국제경쟁력에 관한 연구.” 『무역연구』 제17권 6호, 2021, pp. 129~130.

24) 양문수, “김정은 집권 이후 개정 법령을 통해 본 ‘우리식경제관리방법’.”, p. 89.

으며, 무역계획을 승인없이 주고 받는 행위를 금지하였다. 무역계획을 인민경제 계획에 기초하여 작성하게 되면 인민경제계획이 시달된 때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므로 무역계약의 범위가 한정될 수밖에 없어 자율성에 제한이 생긴다.

무역거래 관련 북한 당국에 제출, 보고해야 하는 자료 종류가 증가하고 해당 자료 작성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수집하는 절차를 체계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통제 강화적 측면을 엿볼 수 있다. 구체적인 조항을 통해 살펴보면 자금거래, 결제방식에 관한 내용을 수록했던 기존 무역법 제18조에는 재정총화 항목이 추가되었다. 재정총화는 수출입품을 계산하여 신청한 문서, 수출입품 검사증 및 검수증, 가격승인문서, 계약서 사본 등 증빙 문건을 기반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수출입 전반에 대한 모든 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절차가 추가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제34조(수출입결과보고) 개정 내용에서 종전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가 별도의 기한 제한 없이 수출입계획 실적을 국가계획기관과 무역지도기관, 통계기관에 보고했다면, 개정법에서는 월별로 중앙무역지도기관, 중앙재정지도기관, 통계기관에 보고하도록 했다. 특히 중앙무역지도기관과 중앙통계기관은 무역계획 실적자료를, 중앙재정지도기관은 재정결산자료를 국가계획기관에 분기별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중앙세관지도기관은 수출입 실적 자료를 국가계획기관과 중앙통계국에 월별로 제출하도록 하였다. 수출입 실적을 정기적으로 집계하는 한편 무역거래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와 수출입에 관련된 기관 자료를 비교함으로써 허위 자료 제출에 대한 우려를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중앙무역지도기관은 연간 무역수진 타산과 종합분석을 시행하고 무역발전을 위한 전략안을 작성하여 내각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무역 분권화가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주요 국경 통과지점에 수출입 물자교류 장소를 구축, 운영하도록 한 것은 거래 물품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이며, 반출입 중지와 영업허가증 회수 조항을 추가 또는 구체화함으로써 자유로운 무역거래에 제한을 가하고 있다.

앞서 경제 관련 개별법의 주요 개정 내용의 특징을 표로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경제 관련 개별법 개정 내용의 특징을 살펴본 결과 대체로 경제 수행

단위의 권한과 책임, 당국의 통제, 재정지원 여부 등에 주안점이 있었다. 그러나 개별법이 관할하는 경제 분야의 우선순위, 발전 수준 등으로 인해 개정 내용에서 도출된 특징들에는 차이도 있었다.

<표 1> 경제 관련 개별법 주요 개정 내용의 특징

구분	특징
인민경제 계획법	계획목표 달성 중시, 계획수행의 분권화, 계획수행 주체의 책임 강화
재정법	당국의 지원 축소, 생산단위의 권한과 책임 동시 확대, 재정통제 강화
농장법	당국의 지원 확대, 농장 자체 경영권 부여, 자율성 확대에 의한 부작용 방지 및 통제
기업소법	기업경영관리 개선방안 제시, 기술개발을 통한 생산확대, 국가경제발전전략과 기업경영전략의 연계
무역법	무역 범위 구체화, 무역 통제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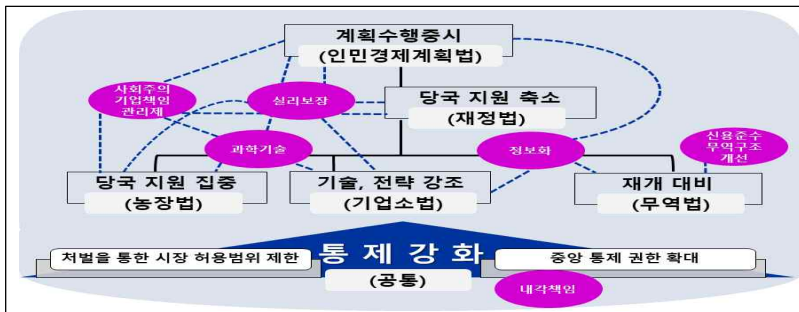
출처: 저자 작성

IV. 사회주의 헌법 개정 이후 북한의 경제관리방식 변화

개정법에 반영된 북한의 경제관리방식을 경제 관련 개별 법령의 층위별로 정리하면, 인민경제계획법을 통해 수립한 계획을 반드시 수행해야 한다는 것은 경제관리 계획 단계에서의 원칙이다. 계획수행을 위한 재정 지원은 당국에 의존하기보다 농장, 기업 등 개별 생산 단위에서 자체적인 역량을 통해 조달하는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당국의 재정 지원이 축소된 가운데 생산 단위별 계획수행의 동력을 이끌어 내기 위한 방법으로 실리보장을 기반으로 생산 단위에 자율성과 권한을 부여하는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의 적극적인 시행, 과학기술을 통한 보강을 강조한다. 원료와 설비 보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에는 특히 기술과 전략을 강조하게 된다. 반면에 민심을 확보하고 체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한정된 재원을 농장에 집중하는 방식을 택한다. 한편 대북제재와 코로나19 상황

의 지속으로 인해 신용준수와 무역구조 개선을 중심으로 무역 재개에 대비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다만, 주목해야 할 점은 개정법에 반영된 북한의 경제관리방식은 내각을 통한 당국의 통제가 공통적으로 적용되어 있다는 점이다. 북한 당국이 개정 헌법과 개별법을 통해 추진하고자 하는 경제관리방식을 개정법에 반영된 특징을 중심으로 도식화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개정법에 나타난 북한의 경제관리방식



출처: 저자 작성

개정법을 통해 도출된 경제관리방식의 특징이 상호 충돌하는 부분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생산 단위의 자율성과 권한 확대, 실적에 따른 차등 분배는 경제관리의 개혁적 요소를 띄고 있다. 반면에 금지 및 처벌 규정 세분화를 통한 시장 거래 허용 범위 제한, 중앙의 통제 권한 확대는 오히려 경제관리에서의 개혁 중단, 또는 후퇴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 경제관리방식 간의 상충은 북한의 경제관리방식이 고정된 것이 아닌 ‘현재진행형’이라는 것을 방증한다. 자율성과 권한 확대를 통해 시장과의 연계를 보다 효율화하면서도 통제를 통해 균형을 잃지 않기 위한 북한 당국의 의도가 경제관리방식에 반영된 결과이기 때문이다. 현실이 법에 반영되고, 마련된 법이 현실을 규제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현재진행형’ 경제관리방식을 추진하고 있다는 의미다.

그러면 법이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북한 당국의 경제관리방식 추진 이행에 담보력을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하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법 개정 이후의 후속 조치들을 경제계획·재정지원·농업·기업·무역 분야로 구분하여 살펴보자. 후속

조치 내용은 김정은의 연설, 당 및 내각기관 주최의 각종 회의, 보고 및 북한의 공식 언론 보도 내용 등을 중심으로 파악하였다.

먼저 경제계획 분야에서는 2021년 9월 인민경제계획법을 개정하기 전까지 강한 규율 확립을 통해 계획을 무조건 달성해야 하며 경제계획은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하게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²⁵⁾ 그러나 2021년 경제계획 수립 기조는 대북제재,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달성할 수 없는 새로운 계획을 제시하기보다 기존 계획을 정비, 보강하는 방식으로 변화한다. 아울러 경제계획에서 내각을 중심으로 규율을 확립한다는 원칙을 꾸준히 지속한다. 특히 2023년 북한 당국이 반드시 달성해야 할 12고지를 제시하고 계획에 대해 흥정할 권리를 부정하고 어길 시 처벌하는 등 계획수행을 위한 ‘철저한 복종’ 수준의 규율을 강조한 것은 수행해야 할 계획에 대한 집중을 나타낸다.²⁶⁾

둘째, 재정지원 분야에서는 2021년까지 당국에 자금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 5일차 회의에서 ‘당 재정규율을 강화하여 재정관리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킬데 대하여’ 의정에 대한 결정서를 채택했다.²⁷⁾ 다음 날 진행된 조선노동당 제8기 제1차 전원회의에서 당 중앙검사위원회 권능을 높이려는 목적과 당 규율 감독 사업을 책임지는 부서가 견지해야 하는 원칙 등이 제시되었는데, 이는 당 재정관리사업을 철저히 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되었다. 당국에 집중되어야 하는 자금이 관료주의, 부정부패 행위들로 인해 불법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처벌하고 방지하기 위한 것임을 회의 결과 내용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²⁸⁾ 반면에 2022년에는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기조에 따라 정비와 보강에 초점을 맞춘 재정부운용을 지속하려 한

25) “주요공업부문에서부터 정면 돌파전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키자.” 『노동신문』 2020년 1월 13일; “현 시기 경제사업체계와 질서를 정돈하는 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 『노동신문』 2020년 3월 7일; “증산절약 운동을 전 군중적으로 힘 있게 벌이자.” 『노동신문』 2020년 6월 22일.

26) 당 중앙위 제8기 제7차 전원회의 확대회의 시 논의한 두 번째 의정 “인민경제계획수행 규율을 철저히 확립할 데 대하여”에 반영

27) “당 제8차대회 5일 회의 진행.” 『노동신문』 2021년 1월 10일.

28) “당 제8기 제1차 전원회의 진행.” 『노동신문』 2021년 1월 11일.

다. 다만, 방역 및 식량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농업부문 예산을 별도로 편성했다는 점에서 민생개선에 중심을 둔 가운데 재정 정비, 보강을 강조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²⁹⁾ 한편 2023년에는 대부법을 제정하여 은행이 공장, 기업의 자금 이용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북한 당국이 자금 흐름을 쉽게 통제할 수 있게 했다.

셋째, 북한 당국은 경제관리를 위해 다른 어느 분야보다도 농업 분야 지원에 힘썼다. 농기계 부품 등 수확에 필요한 물자들을 농촌에 공급하고, 농사를 잘 짓기 위한 계획수립에 만전을 기울이라고 강조한다.³⁰⁾ 특히 2021년 1월에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4차 회의 내각사업보고 내용에는 농촌에 대한 당국의 지원 강화가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다.³¹⁾ 2021년 하반기에도 내각 및 중앙기관에서 사회주의 농촌을 지원하고 있다는 보도를 지속한다. 경공업성, 석탄공업성, 국가해사감독국, 수도건설위원회, 무역은행, 육해운성 등에서 노동력, 기계, 영농물자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이다.³²⁾ 2020년과 2021년이 농촌에 대한 당국의 지원을 집중함으로써 경제를 관리하고자 한 해였다면, 2022년은 농촌에 대한 당국의 지원이 약화 되고 농업생산의 통일적 지도를 강조하거나 양곡정책 도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 해였다. 북한 당국은 2022년 1월부터 농업성을 농업위원회로 개편하고 농업생산의 통일적인 지도를 위한 기구 정비에 돌입했다.³³⁾ 이는 김정은의 ‘우리식 사회주의농촌발전의 위대한 새시대를 열어나가자’라는 내용의 보고의 실질적인 후속 조치로 농업생산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당국의 지도와 관리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통제, 관리 기조는 사회주의 농촌 발전법 제정으로 이어져 양곡수매와 공급 사업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더불어 제8기 제10차 정치국

29) “제14기 제6차 최고인민회의 진행.” 『노동신문』 2022년 2월 8일.

30) “가을걷이와 낱알털기를 힘 있게 다그쳐 올해농사를 성과적으로 결속하자.” 『노동신문』 2020년 9월 21일; “다음해 농사차비를 빈틈없이 갖추자.” 『노동신문』 2020년 11월 23일.

31)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4차 회의에 제기한 내각사업보고.” 『노동신문』 2021년 1월 18일.

32) “가을걷이와 낱알털기에 총력을 집중.” 『노동신문』 2021년 10월 17일.

33)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정령, 농업성을 농업위원회로 격상.” 『노동신문』 2022년 1월 26일.

회의를 개최하여 농사실태 및 농업정책 집행 문제를 토론하면서 양곡정책 집행을 방해하는 현상에 대한 투쟁을 언급하였고, 양곡정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자고 다짐했다.³⁴⁾ 양곡 수매강화 기조 연장선에서 10월에는 수매 확대를 위해 수매법 제정이 이어졌다. 또한 양곡수매와 가공, 판매 등에서 제도와 질서를 확립하여 양정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12월에는 양정법을 개정했다.

이처럼 농촌에 대한 당국의 지원만으로는 계획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당국의 통제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농업 분야 경제관리방식이 변화되었다. 한편 2023년에도 2022년의 관리방식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새시대 농촌혁명강령 실현을 위해 생산목표 달성, 농사지도 개선, 농촌살림집 건설을 강조하는 한편 내각총리가 농업현장을 방문하여 양곡정책의 정확한 집행을 촉구하였다.³⁵⁾

넷째, 2020년 11월 기업소법 개정 이전부터 북한 당국은 과학기술이 경제발전의 핵심이라고 강조해 왔다. 노동신문 논설에서 기업 경영관리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경영관리의 핵심이 과학기술에 있다고 주장한다. 보도 내용에는 에너지 절약형, 노력 절약형, 기술 집약형으로 생산공정을 확립하고 원료 및 자재의 국산화, 재자원화를 실현하는 방식으로 기업을 경영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³⁶⁾ 기업의 생산 정상화와 효율적 경영에 당국의 지원 등 뚜렷하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력이 없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2021년 기업 경영관리 부문에서도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기조 속에 정비와 보강전략을 추진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4차 회의에서 진행된 내각사업 보고 내용에 따르면 기업의 경영 여건을 개선한다는 계획을 밝히고 과학기술이 기업경영 개선을 선도할 수 있도록 촉진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³⁷⁾ 과학기술 이외에도 설비와 자재의 국산화 비중을 점차 증가시키고 재자원화를 기업 경영에 도입해야 할 필요성도 강조하고 있다.³⁸⁾ 2022년에도 기업

34) “제8기 제10차 정치국회의 개최.” 『노동신문』 2022년 9월 26일.

35) 『노동신문』 2023년 2월 27일; 2023년 9월 25일; 2023년 10월 2일.

36) “주체과학 증폭은 적들의 과학기술 봉쇄 무력화와 사회주의전진 가속화를 위한 최선의 방략.” 『노동신문』 2020년 2월 21일.

37) 조선중앙통신, 2021년 1월 18일.

38) “김덕훈 내각총리, 서부지구 여러 부문 사업 현지요해.” 『노동신문』 2021년 6월 27일.

을 과학기술주도형, 개발창조형기업체로 전환한다는 방향만 제시한 채 기업 경영관리 개선을 위한 당국 차원의 특별한 지원을 찾아보기 어렵다. 한편, 2023년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25차 전원회의에서 과학기술인재관리법을 제정을 결의하였다. 법 제정의 목적은 과학기술인재들이 경제발전을 위해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며, 기업을 비롯한 생산단위에서 과학기술인재들의 자질 향상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데 있다고 설명한다.³⁹⁾

마지막으로 무역 분야는 무역법 개정 이후 다른 분야에 비해 북한 당국의 계획, 전략 등이 각종 회의 내용이나 보도를 통해 나타나지 않았다. 대체로 2020년과 2021년에 무역 재개 대비를 위한 준비가 있을 뿐 특별한 후속조치들을 파악하기 어렵다.⁴⁰⁾ 반면에 2022년에는 전문이 공개되지 않아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지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18차 전원회의를 통해 무역법이 개정되었다. 대외 무역을 준비 중이었던 이전과 달리 중앙집권적 지도와 통제를 더욱 강화하는 조항들이 보충되었다.⁴¹⁾ 또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6차 회의에서 내각 총리의 경제 현안 보고에서 “대외경제 부문에서 국가의 유일무역제도를 환원 복구하기 위한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고 발언한 내용에 대해 중앙집권적 무역관리 방식으로 변화할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⁴²⁾ 이후 2023년 현재까지 무역에 관한 북한 당국의 별도 언급이나 조치들이 파악되지 않는 상태다.

V. 결론 및 시사점

2023년 현재 북한은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실행 3년 차에 이르렀다. 2025년까지 남은 기간 동안 북한이 당초 새로운 5개년 계획에서 발

39) 『노동신문』 2023년 4월 12일.

40) 2020년 4월에 조선국제무역촉진위원회에서 ‘조선상품’ 개정관을 출간한 소식과 2021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무산수출가공구’ 설치에 관한 내용을 보도한 내용 이외 특별한 보도가 없었다.

41) 조선중앙통신, 2022년 1월 30일.

42) 연합뉴스, 2022년 2월 8일, <http://www.yna.co.kr.view/>(검색일: 2023.10.13.).

표한 것과 같이 당국의 지도를 강화하는 중앙집권적 경제관리방식으로 전환할 것인지, 또는 자율·분권적 요소를 유지한 채 한시적인 규율 강화를 병행할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본 연구를 통해 북한 당국이 사회주의 헌법과 개별법 개정을 통해 추진하고자 한 경제관리방식을 파악할 수 있었다. 개별법 개정의 후속 조치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경제관리방식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사항도 발견되었다. 특히 내부 회의 등을 통해 언급한 내각 역할 강화에 관한 내용에서 개정법에서 찾아볼 수 있었던 경제계획 수행의 분권화 및 자율성의 측면은 다소 약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히려 계획수립 및 수행의 탄력성을 부여했던 종전에 비해 반드시 달성해야 할 사항을 당국이 지정하고 철저한 복종을 강요하는 기조로 변화할 가능성이 높다. 그만큼 계획 수행의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에는 대내외 환경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아울러 당국의 재정지원 축소 속에서도 농업 분야에 대한 지원은 집중하고자 했던 종전 관리방식에서 재정적 지원을 약화하고 양곡정책을 추진하는 등 중앙 관리식으로 되돌아갈 가능성도 엿보인다. 다만, 농촌 살림집 건설, 시군발전법을 통한 지방경제 활성화 등으로 민심 달래기 행보를 병행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2023년 최근 들어 당국의 자금이 부족한 상황을 시인하고 있다는 점과 과학기술 도입 및 인재 양성만이 기업의 경영관리를 개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되풀이 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제 정비, 보강에 집중하는 형태의 경제관리방식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외 무역 분야에서는 무역 재개를 염두에 둔 준비 차원의 동향들이 파악되었으나 2022년 1월 무역법 개정과 북한의 공식 회의 내용을 미루어 볼 때 중앙의 통제력이 더욱 강화되는 양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김정은은 2022년 6월 8일부터 10일까지 진행한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2022년을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수행을 위한 중요한 해라고 강조하며, 전원회의를 계기로 경제지도관리에서 새로운 변침점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한다. 김정은이 직접 경제지도관리의 변화를 언급한 이유는 세 번째 의정으로 제시한 비상방역 상황 관리 대책의 시급성과 연관되어 있다.⁴³⁾ 강도 높은 방역 조치로 인해 경제정책추진에 어려움이 발

43)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전원회의 확대회의에 관한 보도.” 『노동신문』 2022년 6월 11일.

생했고 이는 개정 사회주의 헌법과 경제 관련 개별법에 반영된 경제관리방식의 변화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북한의 경제관리방식 변화를 정리한 것은 <표 2>와 같다.

<표 2> 북한의 경제관리방식 변화와 전망

구분	개정법 내용 기준	후속 조치 기준	전망
경제계획	계획수행 증시에 따른 계획 수립수행의 자율성, 분권화 확대	계획수행 증시에 따른 당국 주도의 계획수립 및 계획수행을 위한 강한 규율 강조	관리방식변화가능
재정	당국의 지원 축소	당국의 지원 축소	관리방식지속
농업	당국의 지원 집중	양곡정책을 통한 당국 주도의 관리 및 민심 달래기 행보 병행	관리방식변화가능
기업	기술 및 경영전략 강조	기술 및 경영전략 강조	관리방식지속
무역	재개 대비 무역 정비	중앙집권적 방식으로 무역 관리	관리방식변화가능
통제	내각의 역할 강화를 통한 당국의 통제 권한 확대	내각의 역할 강화를 통한 당국의 통제 권한 확대	관리방식지속

출처: 저자 작성

법과 제도의 변화가 실제 현실에서 적용, 작동하는지에 대한 파악은 쉽지 않다. 본 연구는 실제 작동 여부에 초점을 두기보다 북한 당국이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의 방향성과 그 이행 여부를 중심으로 경제관리방식 변화를 검토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아울러 김정은이 집권 초에 추진했던 개혁적 요소가 담긴 경제관리방식이 수세적으로 변하는 과정에 국제안보적 환경이 미친 영향에 대한 추가 검토가 보완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북한의 경제관리방식의 특징을 드러낼 수 있는 경제계획, 재정, 농업 및 기업, 무역, 그리고 통제 권한 등 일련의 기준을 중심으로 북한 당국이 표방한 정책의 이행 여부와 향후 지속성에 대해 예측해 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참고문헌

- 국가정보원, 『北韓法令集(上), (下)』, 2022년 10월, http://nis.go.kr:4016/AF/1_2_1.do
(검색일: 2023.6.20.).
- 류지성, “최근 북한입법의 변화 분석.” 『북한법연구』 제28호, 2022.
- 박선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의 제정과 개정 과정을 통해 본 북한헌법에 관한 연구.” 『公法學研究』 제16권 제4호, 2015.
- 박정진, “제2기 김정은 정권의 정책방향과 권력 조직의 구조: 최고인민회의의 14기 1차 회의를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정치』 제36권 제1호, 2020.
- 박진우, “2019년 개정 북한 헌법에 대한 고찰- 2016년 개정헌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홍익법학』 제20권 제3호, 2019.
- 법제처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북한의 경제법제 소식-2019년 북한 사회주의헌법 개정의 주요 내용 및 특징.” 『남북법제 소식』 2월호, 2020.
- 백과사전출판사, 『광명백과사전 5 경제』, 평양: 백과사전출판사, 2010.
- 사회과학출판사, 『재정금융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5.
- _____, 『조선말대사전(증보판) 2』,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17.
- 안순기, “한국과 중국의 서비스무역 국제경쟁력에 관한 연구.” 『무역연구』 제17권 6호, 2021.
- 양문수, “김정은 집권 이후 개정 법령을 통해 본 ‘우리식경제관리방법.’” 『통일정책 연구』 제26권 2호, 2017.
- _____, “제재코로나 시기 재개정 법령을 통해 본 북한의 경제정책.” 『국가안보와 전략』 제23권 3호, 2023.
- 정승호·김바우, “북한 가공무역의 기술수준 분석: 중국과의 비교.” 『비교경제연구』 제28권 제1호, 2021.
- 조재현, “북한헌법 개정의 배경과 특징에 관한 헌법사 연구.” 『미국헌법연구』 제29권 제3호, 2018.
- 최은주, “김정은 집권 시기 경제법제의 변화와 전망.” 『세종정책연구』 2022-1, 2022.
- 최정욱, “북한 조세·재정 법제의 최근 동향.” 『통일과 법률』 제53호, 2023.
- 최지영, “대북제재 장기화와 북한의 재정금융 제도 변화.” 북한연구학회 동계학술회의 발표문, 2022.
- 추석용, “북한 ‘사회주의 기업책임관리제’의 추진과정과 특징.” 『북한학연구』 제18권 제1호, 2022.
- 하현수, “중국의 가공무역관련 주요 정책 변화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12권 1호, 2011.

- 현두륜,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 경제 관련 법령의 변화.” 『북한법연구』 Vol. 29 June, 2023.
- 황의정, “김정은 시대 북한식 사회주의법치의 의미와 한계 - 법의 지배의 일반론적 시각을 중심으로.” 『東北亞法研究』 제12권 제3호, 2019.
- “가을걷이와 낱알탈기를 힘 있게 다그쳐 올해농사를 성과적으로 결속하자.” 『노동신문』 2020년 9월 21일.
- “가을걷이와 낱알탈기에 총력을 집중.” 『노동신문』 2021년 10월 17일.
- “김덕훈 내각총리, 서부지구 여러 부문 사업 현지요해.” 『노동신문』 2021년 6월 27일.
- “다음해 농사차비를 빈틈없이 갖추자.” 『노동신문』 2020년 11월 23일.
- “당 제8기 제1차 전원회의 진행.” 『노동신문』 2021년 1월 11일.
- “당 제8차대회 5일 회의 진행.” 『노동신문』 2021년 1월 10일.
- “우리식 사회주의 농촌발전의 위대한 새시대를 열어나가자.” 『노동신문』 2021년 12월 31일.
- “제14기 제6차 최고인민회의 진행.” 『노동신문』 2022년 2월 8일.
- “제8기 제10차 정치국회의 개최.” 『노동신문』 2022년 9월 26일.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전원회의 확대회의에 관한 보도.” 『노동신문』 2022년 6월 11일.
- “주요공업부문에서부터 정면 돌파전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키자.” 『노동신문』 2020년 1월 13일.
- “주체과학 증폭은 적들의 과학기술 봉쇄 무력화와 사회주의전진 가속화를 위한 최선의 방략.” 『노동신문』 2020년 2월 21일.
- “증산절약 운동을 전 군중적으로 힘 있게 벌이자.” 『노동신문』 2020년 6월 22일.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정령, 농업성을 농업위원회로 격상.” 『노동신문』 2022년 1월 26일.
-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4차 회의에 제기한 내각사업보고.” 『노동신문』 2021년 1월 18일.
- “현 시기 경제사업체계와 질서를 정돈하는 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 『노동신문』 2020년 3월 7일.
- 조선중앙통신, 2021년 1월 18일.
- 조선중앙통신, 2022년 1월 30일.

Abstract

Changes in North Korea's Economic Management Method Following
the 2019 Socialist Constitution Revision:
Focusing on Revisions to Individual Laws Related to the Economy

Mi Yeon Kim(Senior Researcher, KDB Bank)

In this study, we summarized the status of major economic laws and regulations following the revision of the Socialist Constitution in 2019 and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visions to identify changes in North Korea's economic management metho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features that provide a glimpse into changes in economic management methods in each sector were derived from the revisions to the People's Economic Planning Act, Finance Act, Farm Act, Enterprise Act, and Trade Act. Meanwhile, as a result of reviewing follow-up measures in each field to determine whether the law performs the function of providing collateral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economic management method, it was also discovered that changes in the economic management method could be predicted. In terms of plan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there is a high possibility that the government will specify what must be achieved and force strict obedience. In addition, there is a possibility of returning to central management, such as weakening financial support for the agricultural sector and promoting grain policy. In the field of foreign trade, trends in preparation for the resumption of trade have been identified, but considering the revision of the Trade Act in January 2022 and the contents of North Korea's official meeting, it is expected that the central control will be further strengthened. In general,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are expected to continue their economic management approach that focuses on economic maintenance and reinforcement for the time being.

Keywords: Socialist Constitution, National Economic Planning Act, Finance Act, Farm Act, Enterprise Act, Trade Act, Economic Management Method

투고일: 2023년 12월 26일, 심사일: 2024년 2월 6일, 게재확정일: 2024년 2월 15일